

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 [2004. 3. 11 법률 제7188호로 공포]됨에 따라 기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 기금을 통합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관련법령

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

3.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조성(안 제2조)
- 나. 기금의 용도(안 제3조)
- 다. 기금의 운용·관리(안 제4조)
- 라.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(안 제5조)
- 마.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(안 제6조)
- 바.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(안 제7조)
- 사.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 지정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아. 기금운용심의(안 제11조)
- 자.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(안 제12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건은

-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. 3. 11부로 법률 제7188호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·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 입법취지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하므로써
-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다고 판단되며
- 특히 관련 법령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용도·운용관리등 적립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
2004년 12월

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